

이미 제출했습니까?

2020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아무런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한 빨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세금 신고서 제출할 의무가 없거나 2019 또는 2020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제출자 등록 도구를 이용해 빠르게 등록하세요. 귀하는 자녀 세액공 제또는 경제 충격 지원금의 자격대상일수 있습니다. 이 IRS 도구는 2021년 10월 15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자격이 되는 가정은 6세 이하 자녀 한 명당 한달에 \$300까지, 그리고 6세 이 상 자녀 한명당 한달에 \$250까지 선급 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급금 지급은 7월 15일 부터 시작되며 아무런 조치를 할 필요 없이 12월까지 월별로 지급됩니다.
- 귀하가 근로소득 또는 소득세 납부액이 없더라도 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세액공제는 2021년에 대한 선급금
 만 포함합니다.

미국인구조계획법의 자녀 세 액공제법에는 아래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한도가 2021년말 기준 으로 5세이하 자녀 한명당 \$3,600 또 한 6세 이상 17세이하 자녀 한명당 \$3,000 으로 증가했습니다.
- 이 세액공제는 2021년 말 기준으로 18 세 미만 자녀도 포함됩니다.
- 납세자들은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 세액공제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선급금 수령을 원치 않는 적격 납세 자들은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여 선급금 수령에 대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IRS/gov/ko/2021자녀세액공제

